

#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상세해설

- 국세청, 2020. 1

## | 근로소득

### 1 근로소득의 범위(소득세법 §20)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령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령보상금은 기타소득)

또한, 근로소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소령 §38①)

- 기밀비(판공비 포함)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봄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연월차수당 · 승무수당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 정근수당 · 휴업수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리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리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 ·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기술수당 ·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 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 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그 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 ①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소법 §22 ③)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조특법 §29의6 ①)

## 2 비과세 근로소득

### 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 (소령 §38)

#### 1)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

#### 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3)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함(소칙 §15의3)

-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업장에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함)
- 적립 방식(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

#### 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 4)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선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선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소득-67, 2003.12.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정관에 규정한 수혜대상자에게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1팀-1366, 2007.10.08.)

#### 6) 경조금 (소득 §10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법 §12 3호 자)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 포함) 등이 받는 수당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승선 중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 2…2 ①)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 · 고전압위험수당 · 폭발물위험수당 · 비행수당 · 비무장지대근무수당 · 전방초소근무수당 ·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선원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 ※ 국외근로소득 및 아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항공수당 · 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건물의 방호 · 유지 · 보수 · 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쳐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취재수당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

#### 다. 국외근로소득 (소법 §12 3호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 )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 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법 §12 3호 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승선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됨

#### 마. 비과세 식사대 등 (소법 §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비과세 되는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현물 식사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과세되는 식사 ·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 · 기타 음식물로 본다.

##### 2)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 식사 ·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식사 ·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 ·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법 §12 3호)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 ·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항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김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계엄법 등을 말함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 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별정 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해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공무상 요양비 · 요양급여 · 장해일시금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 장애보상금 · 사망조위금 · 사망보상금 · 유족일시금 · 퇴직유족일시금 · 유족연금일시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순직유족보상금 · 직무상유족보상금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재해부조금 ·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휴직 포함)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에 해당

○ 비과세 학자금 지급액

초 ·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 수업료 ·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 ·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 ·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고서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06.24)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연금의 사용자부담분은 납입 당시 근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기 곤란하고, 추후 인출시 과세(퇴직·연금)되므로 2013년부터 비과세 소득에서 삭제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 시급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

### 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分	수 입 시 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임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임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성과급 상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li> <li>-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li> </ul>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퇴사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4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

로 한다.

####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소령 §51 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 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 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 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한다.
- 이 경우 급여를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 받은 때에는 정기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 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 가. 원천징수의무자 (소법 §127)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 납부를 해야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 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개인) 포함

#### 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 (소법 §134, §135)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구 분	원천징수시기(특례)
매월분의 근로소득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 재취직 포함)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과세기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급여액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 표준금액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의 경우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2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 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소령 §196)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 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매월/반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홈택스(www.hometax.go.kr)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와 종교단체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다.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라. 징수 및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근로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
- 「소득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세액공제 등

#### 마.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2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2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3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 가.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법 §137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의하여 정수된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나.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소법 §138)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였다가 그 연도의 중도에 다시 퇴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현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납세조합에 의한 연말정산 (소법 §150)

-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조직한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된 근로소

득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라. 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분할 등의 연말정산

-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법인46013-2484, 1998.09.03)
-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법인46013-1708, 1998.06.25)
-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서면1팀-1096, 2004.08.09.)

#### 마.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해당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한다.

#### 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칙 §92)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고, 해당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연말정산 시기

### 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법 §134)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한다.

### 나.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소득 세법 기본통칙 137-0…1)
-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한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소령 §134④)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고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1 근로소득공제 (소법 §4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가. 공제금액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Rightarrow 350\text{만원} + (500\text{만원} \text{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text{분의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Rightarrow 750\text{만원} + (1,500\text{만원} \text{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text{분의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Rightarrow 1,200\text{만원} + (4,500\text{만원} \text{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text{분의 } 5)$
1억원 초과	$\Rightarrow 1,475\text{만원} + (1\text{억원} \text{을 초과하는 금액의 } 100\text{분의 } 2)$

※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아니함

### 나. 적용방법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2 인적공제

구 분	공 제 금 액
(1)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2) 추가공제	<p>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li> <li>-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li> <li>-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li> <li>-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li> </ul>

-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 ※ 2014.1.1. 이후 추가공제 중 6세 이하자, 출산·입양자, 다자녀는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

## 가.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 1) 기본공제 (소법 §50)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해당 거주자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구 분	공 제 대 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59. 12. 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1999. 1. 1. 이후 출생)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20세 이하</li> <li>○ 만 60세 이상</li> </ul>
그 밖의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li> <li>○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li> <li>○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li> </ul>

#### ○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법인46013-371(2001.2.16.), 재경부소득46073-12(2000.1.16.)]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되,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

### 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나 학원에 다니는 20세 미만자, 장애·질병 아동, 지능지수가 낮아 자립이 어려운 25세 미만자 등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18세 이상자도 위탁아동에 해당함

### 2) 추가공제 (소법 §51)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산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나. 인적공제 판정

##### 1) 환정시기 (소득세법 §53)

- 공제대상 배우자 · 부양가족 ·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 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2)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령 §106)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사업 소득의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 세표준화정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 대상배우자로 한다.
  - ②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③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① 및 ②에 따라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 3)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 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 다. 인적공제 한도 등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

#### 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소득금액 계산

소득종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① 종합소득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연금: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li> <li>○ 사적연금: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0전 불입분은 비과세</li> </ul>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② 퇴직소득	소 계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종합소득금액 100만원(단,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③ 양도소득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①+②+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 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계산 사례

- 2019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 12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220만원
  - 근로소득금액 120만원 = 400만원 - 280만원(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 80만원 = 200만원 - 120만원(필요경비)  
☞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
  -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2019년 발생한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 2,100만원, 사적연금소득 연 1,000만원  
⇒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가능하며,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2,100만원임

## 3 연금보험료공제(소법 §51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IV

## 특별소득공제(소법 §52)

\*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그 밖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

소 득 공 제	공 제 항 목	공 제 한 도 액
보험료	건강보험·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주택자금	①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180만원 한도)의 40% 연 300만원 [①+②]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주택규 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 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 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 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1,800만원 [①+②+③]
기부금	이 월 분	'13.12.31. 이전 지정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개인연금 저축	납 입 액	'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특자조합출자 등 공제	'17년 까지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5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18년 이후 투자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벤처조합에 투자 하는 경우 100%, 70, 30%) 종합소득금액의 50% (조특법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 증 직불카드·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30%, 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연 300만원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2억원:250만원 1.2억원 초과: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원 추가최대 600만원
소기업·소상 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7천만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출 연 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벤처기업 1,500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 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 축 납입액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 연 240만원



## 1 특별소득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 공제(보험료·주택자금·기부금(이월분)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 2 보험료공제(소법 §52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4-1)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서면-2016-소득-6216, 2017.01.24.)

### 3 주택자금공제(소법 §52 ④, 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도 가능)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거나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m^2$  이하 주택(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

-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될 수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차차입금은 2013.08.13.0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1) 대출자 요건

- 소령 [별표 1의 2]에 의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2)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개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총급여액 요건이 없음에 유의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개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개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 1,000분의 21('18.3.21.~'19.3.19.까지는 1,000분의 18, '17.3.10.~'18.3.20.까지는 1,000분의 16, '16.3.16.~'17.3.9.까지는 1,000분의 18, '15.3.13.~'16.3.15. 1,000분의 25, '14.3.15.~ '15.3.12. 1,000분의 29)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3) 공제한도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4) 공제증명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의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등본
-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요 예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 및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원천-527, 2011. 08.25.)

\* 일반 법인, 각종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2014-112, 2014.06.02.)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m<sup>2</sup> 이하의 주택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주거전용면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서면법규-1345, 2012.11.16.)

####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경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이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이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2)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4억원('06년부터 '13년까지는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3)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공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특례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제8항 각 호)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여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②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
- ③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양도자가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 ④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4억원 이하인 경우
  - 이 경우 1)의 ①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 ⑤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5) 주택분양권 등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로서 분양가격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원 이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주택분양권의 가격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 6) 공제한도

- 2015.01.01. 이후 최초 차입(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해당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 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 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음의 한도 적용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2012. 1. 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 로 지급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 ※ 2012.1. 이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방식을 가치식·변동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임
- ※ 2011.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연장(15년 → 30년), 금리유형·상환방식 변경하여도 종전 공제한도 적용
- 2011.12.31. 이전 신규차입 또는 연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1천만원(30년 이상인 경우 연 1천500만원)으로 한다.
-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600만원이며, 2003.12.31 이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04.1.1 이후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의 공제금액 한도액은 연 1천만원임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5조, 2003.12.30)
- 2003.12.31 이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기존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600만원, 신규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액은 연 1천만원이며, 각 차입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7)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 해당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http://www.kais.kr/realtyprice/main/mainBody.htm)) 참조
  - 그 밖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 수 있는 서류 및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 ○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8)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공동차입기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차입기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재경부소득46073-12, 2001.1.16)

####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시 주택 수 계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를 판단
- 농가주택도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는 제외)
- 사업용·판매목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 2013년 이전 차입금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판단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

####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요 예규

-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단서 규정(공제한도)을 적

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서면법규과-1489, 2012.12.14.)

→ 개정 공제한도 적용은 2012.1.1. 이후 차입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적용

- 거주자와 주민등록의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실제 누나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768, 2010.10.01.)
- 취득당시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음)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468, 2009.05.29.)
- 부부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53, 2009.05.27.)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는 동 차입금이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되지 아니함(원천-488, 2009.06.04.)
-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680, 2009.08.11.)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취득 당시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해당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소득-116, 2008.05.27.)  
→ 위 사례는 2013.12.31. 이전 대체 취득분에 한해 적용하고, 2014.1.1. 이후부터는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기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574, 2008.04.25.)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원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해당 차입금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09.25.)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 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759, 2010.09.29.)
-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원천-537, 2011.08.30.)
-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제세원-192, 2012.04.26.)



## 그 밖의 소득공제(조특법)

### 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구 조특법 §86 : 2013.1.1. 삭제)

#### 가.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0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 나.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조특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소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재소득46073-87, 2003.06.13.)

####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조특법 §86의3)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참조)로서 매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불입하여 납입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

#####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시 퇴직소득세를 과세(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경우 해당 분기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것으로 봄
  -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불입한 경우

- 분기 이전에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공제부금 중 6개월분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먼저 불입한 경우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다만 납입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해지가산세 폐지(조특법 §86의3 ⑤)
  -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부과하던 해지가산세를 폐지

###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준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 1) 청약저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 중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포함하며,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 2)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

### 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또는 소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 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

### 다. 공제금액 한도

- 소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과 주택마련 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공제한도를 적용(2011.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에 따라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을 공제한도로 적용하고, 2012.1.1. 이후 2014.12.31.까지 차입분은 상환방식에 따라 500만원, 1,500만원 적용)

### 라. 소득공제 금융상품 종도해지시 추징세액

-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저축가입 후 추징기간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종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해지가산세가 부과(단, 연금저축은 실제감면 여부와 별개로 부과)되며, 법

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 부과 제외

- \* 2013.3.1.이후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저축 불입액의 2%)를 부과하지 않음

#### 마. 주요 예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4.23.)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서면1팀-1097, 2005.09.16.)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12.26.)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210, 2010.03.11.)

####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조특법 §16)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0.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중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투자 당시에는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자분이나 투자자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기능하나, 제3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 공제 불가능

※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 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의 경우 100분 30,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40%·대중교통이용분의 40%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를 추가로 합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최대 600만원 한도)

###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 - \textcircled{6})$ 에 해당하는 금액
-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 × 15%
-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
- ④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 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 공연 사용분) × 40%

####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라"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는 제외한다.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② 현금영수증(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에 기재된 금액
    - \*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을 포함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특법 §126의2 ④, 조특령 §121의2 ⑥)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순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공 과 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법정·지정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면세물품 구입비용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 마.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에 의해 공제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 공제금액을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

-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 바. 유의사항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업원의 신용카드 등 공제 신청금액에 법인(사업)경비로 처리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조특법 §88의4)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 1,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하는 때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의 매입가액 등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를 예탁한 때에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 중 연말정산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1주 미만의 단주는 1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때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하는 주권인출내역서를 해당 법인에게 제출한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은 우리사주인출 및 과세명세서를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 7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조특법 §30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1천만원 한도) 할 수 있음.

$$\left| \begin{array}{l} \text{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text{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end{array} \right| \times 50\%$$

\* 위기지역 내 「조특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함

## 8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15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조특법 §132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6조의3)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88조의4 제1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91조의16)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조의2)

VI

## 세액감면(공제) 및 농어촌특별세

### 1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법 §59의5)

- 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 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조특령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은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 단절여성의 경우 재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15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 6년)을 근

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혼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경력단절 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하였을 것
  -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 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 ※ 제외 업종 예시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서비스업 중 출판물 교정·교열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된 업종과 일치함 (서면-2015-소득-0636, 2015.05.12.)

## ○ 감면 신청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감면급여비율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 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 적용 배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frac{\text{종합소득}}{\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함

- ②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으로 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1 - \text{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1.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개정된 감면기간(5년)은 2019.1.1.0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9.1.1. 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경우 종전(2년) 규정을 따름

-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아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외국인근로자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

## 2)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 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 §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 가. 세액공제 금액

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금 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나.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 급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

- 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4 자녀세액공제(소법 §59의2)

### 가.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3명:60만원, 4명:90만원, 5명: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 100의30 ②)

### 나. 출산·입양 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는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210, 2014.06.11.)

## 5 연금계좌세액공제(소법 §59의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 : 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 ※ 연금저축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 보험료 공제(2013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 이후)

### 가.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연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PR)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소득령 §118의3)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201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15-소득-2645, 2016.02.19.)

## 6 특별세액공제(소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요약〉

세 액 공 제		공 제 항 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보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2%
험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15%
의 료 비	⑦ 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자· 난임시술비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50만원 이내) 등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총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 ⑦ 한도 제한 없음 ⑧ 연 700만원 한도	15% (난임시술비 20%)
	⑨ 그 외 부양가족			
	본 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 액	
교 육 비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 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기 부 금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현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 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정 + 우리 사주 + 지정
	지 정 기부금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15%(30%)
	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 가. 특별세액공제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 공제(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가능
- 소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소칙 제58조에 따른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세청 흠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 가능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증명 서류(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⑤)
  - \*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위의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액공제 불가함에 유의
- 표준세액공제(소법 §59의4 ⑨)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

#### 나. 보험료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대상 보험료 및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자가 소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이며,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

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52-0…2)

-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연령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근로자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1팀-65, 2006.01.18.)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181, 2010.03.03.)

## 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예상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의 보험료(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법 §59의4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 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구 分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⑦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공제한도 없음	가. ⑦ ≥ 총급여액 × 3%인 경우 나. ⑦ + ⑧ ≥ 총급여액 × 3% > ⑨인 경우 다. ⑦ + ⑧ + ⑩ ≥ 총급여액 × 3% > ⑪ + ⑫인 경우	(⑦ + ⑧ + min(⑩ - 총급여액 × 3%, 700만원)) (⑦ + ⑧ - (총급여액 × 3% - ⑩)) (⑦ - (총급여액 × 3% - ⑧ - ⑩))
⑭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원		

\*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함

###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의료비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영수증, 동조 제2항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 및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 ③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

###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3) 의료비 공제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18년 기준 : 소득 수준별로(7단계) 122만원~523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고 기계인정을 도모하는 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

#### 라. 교육비 세액공제(소법 §59의4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만 해당)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118의6 제①항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1)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

서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기본내역 [교육비]를 교육비영수증으로 갈음

-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추가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의 경우 국외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법 제59조의4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

## 2)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전액(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직계존속은 제외)
  - 대학생(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1명당 연 900만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직계존속 포함)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것도 해당)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

## 3)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제외 (소령 §118의6 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집행기준 59의4-118의6-1)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 마.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④)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

#### 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30%	
④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⑤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2)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여부가 아님)

### 3) 기부금 소득 · 세액공제 적용순서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 · 세액공제한다.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 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순서
  - ① 해당연도 기부금을 우선공제
  - ② 이월된 기부금(당해연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공제
    -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
    - \*\*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 적용
- '14년도 이후 이월된 법정기부금 ·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순서

2014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법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법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2014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5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6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7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8년 이월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해당연도 지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2015.12.31. 이전 기부금을 지출한 거주자가 2016.1.1. 이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기재부 소득세제과-473. 2017.10.11.)

### 4) 기부금영수증 혜택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 (소법 §81 ⑫, 법법 §76 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5) 기부금 표본조사 (소법 §175)

- 납세자관할세무서장 등은 소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제59조의4 제4항(기부금 세액공제)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중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소법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포함)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

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7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95의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2015.07.30.)

###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 12%

###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가능

### 4) 공제대상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 납세조합 공제(소법 §150)

소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액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 세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 9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구 조감법 §92의4)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95.11.1 ~ '97.12.31 기간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에 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 주택(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 서울 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95. 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 공제금액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에 해당
- 유의사항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령 제162조 제1항)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95.11.1 ~ '97.12.31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중복공제 불가)
-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근로자가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확인서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 대조필한 사본
  - 당해 금융기관장(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 10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5)

### 가. 과세대상 근로자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구 조감법 §92의4)

#### 나. 과세표준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금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 세액의 계산 및 납부 (환급)

-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20%)
-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신고 · 납부한다.
-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세(소득세) 납부서상의 농어촌특별세란에 기재하여 함께 납부하며,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 등으로 인하여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 환급한다.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화명	1월 22일(수)	1월 23일(목)	1월 28일(화)	1월 29일(수)	1월 30일(목)
미 달러 (USD)	1164.70	1165.10	1167.20	1176.70	1176.00
일본엔 (JPY)	1059.97	1060.87	1071.37	1078.30	1078.45
영국파운드 (GBP)	1519.64	1530.94	1524.01	1532.65	1530.80
캐나다달러 (CAD)	890.95	886.78	884.81	893.84	890.94
홍콩달러 (HKD)	149.88	149.92	150.08	151.32	151.29
위안화 (CNH)	169.06	168.69	168.65	168.71	169.00
유로화 (EUR)	1291.01	1292.74	1286.20	1296.84	1294.95
호주달러 (AUD)	797.18	797.28	789.26	795.21	793.98
싱가폴달러 (SGD)	862.64	863.84	859.66	866.59	863.78
말레이시아링기트 (MYR)	286.06	286.62	287.10	287.98	288.16